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선	기 관 의 장
람	



제708호 2021. 1. 7.(목)

고시

○ 사천시 고시 제2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-- 1 ○ 사천시 고시 제3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사항 고시 ------ 2 ○ 사천시 고시 제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- 3 ○ 사천시 고시 제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-- 4 ○ 사천시 고시 제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--- 5 ○ 사천시 고시 제7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-- 6 ○ 사천시 고시 제8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-- 7 ○ 사천시 고시 제9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-------8 ○ 사천시 고시 제10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------ 9 ○ 사천시 고시 제12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 10 ○ 사천시 고시 제13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 11 ○ 사천시 고시 제14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--- 12 ○ 사천시 고시 제15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 고시 — 13 ○ 사천시 고시 제20호 어촌뉴딜300사업(중촌항) 기본계획 수립·고시 ————

공 고	
○ 사천시 공고 제21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	· 16
○ 사천시 공고 제22호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	17
○ 사천시 공고 제23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	18
입법예고	
○ 사천시 공고 제18호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	20
○ 사천시 공고 제24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26
○ 사천시 공고 제25호 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	34
5]	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/ ☎ 831-2215 / FAX 831-6012

람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-2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20-4호 (2020. 03. 17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 - O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 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목제데크 설치, 옹벽블록 설치, 보행매트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산5-1번지선 공유수면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O 2020, 12, 29,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3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 사항고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승인 실시계획 변경신고 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1. 7.

사 천 시 장

- 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허가일자): 제2016-7호 (2016.11.16.)
- 2. 점용·사용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주소

가.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
나. 주 소 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
- 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- 선진~신촌간 연안정비사업 호안 피복석 설치
- 4. 점용·사용의 장소(공사장소)
 - O 사천시 용현면 신촌리 지선
- 5.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사항
 - O 기존:
 - * 승인번호 : 제2016-7호 (2016.12.20.)
 - * 공사기간 : 2018.08.20.~2020.12.31.
 - * 공사내용 : 호안 피복석 설치
 - 변경:
 - * 승인번호 : 제2020-14호 (2020.12.29.)
 - * 공사기간 : 2018.02.20.~2021.12.31.

(보상협의 지연 및 민원발생으로 사업계획 기간 연장)

- * 공사내용 : 호안 피복석 설치
- 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수리 조건
 - O 점용·사용 허가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 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O 실시계획 승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4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19-1호 (2019. 03. 19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O 사천시 실안동 1096-38번지선 공유수면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O 2020, 12, 29,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5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19-2호 (2019. 03. 19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O 사천시 늑도동 502-13번지선 공유수면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O 2020, 12, 29,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6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19-3호 (2019. 03. 19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 - O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O 사천시 송포동 1526-15번지선 공유수면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**O** 2020. 12. 29.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7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19-19호 (2019. 11. 11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O 사천시 노룡동 9753번지선 공유수면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**O** 2020. 12. 29.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8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20-5호 (2020. 04. 23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산분령항 물양장 정비 공사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O 사천시 실안동 1096-28번지선 공유수면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**O** 2020. 12. 29.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9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1. 7.

- 1. 점용·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: 제2019-6호 (2019. 4. 11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
 - O 성 명 : 사천시장(해양수산과장)
 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- O 하봉항 선착장 연장공사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5-181
- 5.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- O 신고번호 : 제2020-15호
- O 공사기간: 2019.05. ~ 2020. 12.
- 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0.12.29.
- 7.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O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O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10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

『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』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1. 7.

- 1. 점용사용 승인번호(승인일자) : 제2020-6호 (2020. 4. 28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 주소
 - O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 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점용·사용의 목적(공사내용)
- O 부잔교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 - 사천시 늑도동 557-4번지선
- 5.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
- 신고번호 : 제2020-14호
- O 공사기간: 2020.06. ~ 2020.12.
- 6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: 2020.05.07.
- 7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
 - O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.
 - O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.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12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20-1호 (2020. 03. 17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- 사천시 마도동 79-13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O 2020, 12, 30,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13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20-2호 (2020. 03. 17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·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- 사천시 마도동 79-11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O 2020, 12, 30,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14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20-3호 (2020. 03. 17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- 사천시 마도동 79-10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**O** 2020. 12. 30.

제 708호

사천시 고시 제 2021 - 15호

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21. 01. 07.

- 1. 점용·사용 허가번호(허가일자): 제2019-8호 (2019. 04. 30.)
- 2. 점용·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 주소
- O 성 명 : 사천시장(도시재생과장)
- O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
- 3. 공사 내용
- O PE부잔교 접안시설 설치
- 4. 점용·사용(공사)의 장소
- O 사천시 신수동 227-1번지선
- 5.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
 - **O** 2020. 12. 30.

제708호

사천시 고시 제2021 - 20호

어 촌 뉴 딜 3 0 0 사 업(중 촌 항) 기 본 계 획 수 립·고 시

'어촌뉴딜300사업(중촌항)'에 대해『어촌·어항법』제47조의3에 따라 기본계획(사업계획)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사 천 시



- 1. 사업의 명칭 : 어촌뉴딜300사업(중촌항)
- 2. 사업의 위치 : 경남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중촌항 일원
- 3. 계획의 범위 : 20ha
- 4. 사업의 목적과 기본방향
 - 낙후된 어촌, 어항을 통합하여 활성화시켜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'어촌. 어항재생사업'임.
 - 생업공간인 어항과 생활공간인 배후 어촌마을이 서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
 - 어촌이 보유한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민수요를 기반으로 하드웨어(H/W), 소프트웨어(S/W)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어촌 맞춤형 개발계획 수립

제708호

5.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0년 ~ 2022년 (3년간)

○ 총사업비 : 7,283백만원(국비 5,098, 도비 656, 시비 1,529)

○ 사업계획의 개요

- 어항시설정비 : 방파제 연장, 물양장 확장, 부잔교 설치, 경사식선착장,

어장진입로, 굴작업장, 해수소통구, 디자인등부표, 등

대, CCTV, 가로등

- 어민복지시설: 다목적센터, 쉼터조성

- 환경개선사업: 해안도로포장, 안내판설치

6. 관련자료의 열람방법

○ 기본계획서는 사천시청 해양수산과(Tel: 055-831-3126)에 비치되어 있어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있을 수 있음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현황

○ 편입토지조서(중촌항)

બ મો	토지	소재	- ગો મો	기묘	지적면적	편입면적	x () →]	ען ס
연번	읍·면	동・리	지번	지목	(m²)	(m²)	소유자	비고
1	서포면	자혜리	908-28	제	152	10	사천시	방파제 연장 해수소통구, 등대
2	서포면	자혜리	908-27	제	260	10	사천시	물양장 확장
3	서포면	자혜리	908-26	잡	949	949	사천시	CCTV, 가로등 다목적센터
4	서포면	자혜리	908-21	도	4,580	3,000	국토교통부	해안경관로포장
5	서포면	자혜리	산80-1	도	24,222	10	경상남도	
6	서포면	자혜리	1098-1	도	209	10	사천시	
7	서포면	자혜리	991	도	619	10	사천시	안내판설치
8	서포면	자혜리	산137-3	도	1,873	10	사천시	
9	서포면	자혜리	산153-7	도	514	10	사천시	

제70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 21호

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투표법」제9조 및 「사천시 주민투표조례」제5조의 규정에 따라, 2021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사 천 시 장

주 민 투	표 청구권자 총	청구에 필요한	нэ	
합 계	내국인	외국인	연서 주민수	비고
93,787	93,700	87	10,421	청구권자 총수의 1 <i>9</i> 이상

제70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22호

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지방자치법」제15조,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11조 및 「사천시 조 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」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사 천 시 장

조례 제정	·개폐 청구권자	청구에 필요한	비고	
합 계	내국인	외국인	연서 주민수	01 75
93,770	93,700	70	1,876	청구권자 총수의 1 <i>5</i> 0 이상

제70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 23호

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표

「주민소환에 관한 법률」제7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라 2021년도 사천시장 및 사천시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1년1월7일사천시장

■ 시장

	л н		주민소환투표	주민소환투표 청구인	읍・면・동별	주민소환투표
	구 분		청구권자 총수	行(5/100)	최소서명인 수	청구조건
	계		93,595			
사	천	음	14,961		936	
정	동	면	10,228		936	 주민소환투표 청
사	남	면	11,744		936	구권자 총수의
용	현	면	6,363		936	15/100이상의 서
축	동	면	1,526		229	명을 받되,
곤	े	면	3,119		468	
곤	명	면	2,693	14,040	404	 5개 읍·면·동
서	王	면	3,350	14,040	503	이상에서 읍・면
동	서	동	5,974		936	
선	구	동	4,638		696	・동별 각각 최
동	서 금	동	5,551		833	소서명인 수 이
벌	용	농	12,908		936	상의 서명을 받
향	촌	상	5,898		885	아야 함
남	야	동	4,642		697	

^1 천 시 공 보

제708호

■ 시의회 의원

자치단체별		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	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수 (20/100)	읍·면·동별 최소서명인 수	주민투표 청구요건	
시・군	선거구	읍·면·동			,	
	계		93,595			
	가선거구	계	43,296	8,660		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 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
사천시		사 천 읍	14,961		433	20/100이상의 서명을 받
		정동면	10,228		433	되, 2개 읍・면 이상에서
		사 남 면	11,744		433	읍·면별 각각 최소서명 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
		용현면	6,363		433	아야 함
	나선거구	계	10,688	2,138		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
		축 동 면	1,526		107	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
		곤 양 면	3,119		107	되, 2개 면 이상에서 면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
		곤 명 면	2,693		107	의 서명을 받아야 함
		서 포 면	3,350		107	
	다선거구	계	15,254	3,051		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
		동 서 동	5,974		153	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
		선 구 동	4,638		153	되, 1개 동 이상에서 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
		남 양 동	4,642		153	의 서명을 받아야 함
	라선거구	계	24,357	4,872		당해 선거구 안의 주민소
		동서금동	5,551		244	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20/100이상의 서명을 받
		벌용동	12,908		244	되, 1개 동 이상에서 동별 각각 최소서명인 수 이상
		향 촌 동	5,898		244	의 서명을 받아야 함

제 70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 18호

「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 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 및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보장해줌으로써 생활 안정과 복지향 상을 도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보험 가입대상과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보험금 신청과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보험금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제 708호

4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・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재난안 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〉행정정보공개〉법무행정종합정보〉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 - 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5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재난안전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시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 3312, FAX: 831- 6036)

제708호

입	법	예고	사항에	대 하	의겨서
		" —	1 0 11	11 L	

- □ 자치법규명: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 - 성명(단체명):
 - O 주 소:

- O 생 년 월 일:
- O 전 화 번 호:

조례안 내용	의견	비고

제 70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, 그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시민안전보험"(이하 "보험"이라 한다)이란 사천시민(이하 "시 민"이라 한다)을 대상으로 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.
- 2. "보험기관"이란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「한국지방재정 공제회법」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에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 한 기관을 말한다.
- 3. "재난"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 나과 사회재난을 말한다.
- 제3조(보험 가입대상) 보험 가입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(외국인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,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- 제4조(보장범위) 시장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
제708호

- 1. 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
- 2.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
- 3.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
-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(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다)으로 인한 사망
- 5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
- 제5조(보험금 신청) 제4조에 따른 보장범위에 해당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 금을 신청할 수 있다.
- 제6조(보험금액 산정) ①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제7조(보험금 지급)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제8조(보험금 지급 제외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.
 - 1.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
 - 2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최초로 「시민안전보험 계약」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.

관 련 법 규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<u>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</u>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70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 24호

「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의 도비 보조금 예산이 신설됨에 따라 명예수당을 인 상하여 전몰군경 유족을 예우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의 지급액 변경(안 제4조제1항제3호)
 - 월 8만원 ⇒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, 65세 이상은 경상 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
- 나. 올바른 약칭의 사용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〉행정정보공 개〉법무행정종합정보〉입법예고란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·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611,

FAX: 831-6022)

^1 천 시 공 보

제708호

	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	
□ 자치법규명 :		
○ 성명(단체명):		
O 주 소:		
O 생 년 월 일 :		
O 전 화 번 호 :		
조례안 내용	의 견	비고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"사천시"를 "사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"로 한다. 제4조제1항제3호 중 "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을 지급하고"를 "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,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원대상) ① 지원대상은 제2조 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 재 <u>사천시</u> 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 다. 다만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제7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 한 사람은 제외한다.	제3조(지원대상) ①
② (생 략) 제4조(지원사업) ①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 제4조(지원사업) ① (현행과 같음)
1 · 2. (생 략)	1·2. (현행과 같음)
3. 전몰군경유족에게 명예수당 월8만 원을 지급하고,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	3. 전몰군경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은 65세 미만은 월 8만원을 지급하고, 65세 이상은 경상남도와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며
4. ~ 5. (생 략) ② (생 략)	4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관 련 법 규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제4조(적용 대상 국가유공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(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)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. 〈개정 2015. 12. 22., 2020. 3. 24.〉

- 1. 순국선열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
- 2. 애국지사: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
- 3. <u>전몰군경(戰歿軍警)</u>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4. 전상군경(戰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(퇴역·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하거나 퇴직(면직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한 사람(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) 또는 6개월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(이하 "상이등급"이라 한다)으로 판정된 사람
- 5. 순직군경(殉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 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6. 공상군경(公傷軍警): 군인이나 경찰·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7. 무공수혼자(武功受勳者): 무공훈장(武功勳章)을 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

제 708호

-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 - 8. 보국수훈자(保國受勳者)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.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
 - 나.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,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(이하 "간첩체포등의 사유"라 한다)로 보국훈장을받은 사람. 다만,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.
 - 9.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(在日學徒義勇軍人)(이하 "재일학도의용군인"이라 한다):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·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(파면된 사람이나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)
 - 10. 참전유공자: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- 나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
 - 11. 4·19혁명사망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
 - 12. 4·19혁명부상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 - 13. 4 · 19혁명공로자: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 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(建國褒章)을 받은 사람
 - 14. 순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(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

제708호

- 15. 공상공무원: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(군인과 경찰·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)과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(질병을 포함한다)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
- 16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(이하 "특별공로순직자"라 한다): 국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 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- 17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(이하 "특별공로상이자"라 한다): 국가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 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- 18.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(이하 "특별공로자"라 한다):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

□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- 제6조의2(보훈예우수당 〈본조신설 2019.12.26.〉)① 도지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 중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,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전몰군경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법 제13조에 따른 선순위 1명을 대상으로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·절차·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 708호

사천시 공고 제2021 - 25호

「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월 7일

사 천 시 장

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 향상과 복리를 증진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 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보훈명예수당 인상(안 제10조 제1항 제1호)
 -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 → 월 5만원
- 나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제2조, 제3조, 제6조부터 제8조까지, 제9조, 제10조, 제10조의2, 제12조, 제14조)

제708호

3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, 사천시청 홈페이지(www.sacheon.go.kr의 정보공개/민원〉행정정보공개〉법무행정종합정보〉입법예고란)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 · 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법인 ·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4. 보내실 곳: 사천시장(참조: 주민생활지원과장)

(우편번호: 52539, 주소: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, 전화: 831-2611,

FAX: 831-6022)

^ 1 천 시 공 보

제708호

	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	
□ 자치법규명:		
○ 성명(단체명):		
O 주 소:		
O 생 년 월 일:		
O 전 화 번 호:		
조례안 내용	의 견	비고

제 708호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"희생·공헌자"라 함은"을 ""희생·공헌자"란"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 중 "대한민국의"를 "대한민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"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"을 ""국가보훈대상자"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"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라 함은"을 "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라 함은"을 "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라 한은"을 ""국가보

제3조 중 "의한"을 "따른"으로, "의하여"를 "따라"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"(단체 예산지원)"을 "(단체의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제1호 중 "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"을 "시설건립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순례비 등 지원"을 "순례"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사업비 지원"을 "사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"사업 지원"을 "사업"으로 한다.

제 708호

제7조의 제목 "(복지지원 등)"을 "(복지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"범위 안에서"를 "범위에서"로 한다.

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 중 "사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"을 "시장"으로, "창달"을 "발전"으로 한다.

제9조 중 "창달"을 "발전"으로, "관계기관에 대하여"를 "관계기관에"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의해"를 "따라"로 하고, 같은 항 제 1호 중 "3만원"을 "5만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한하고"를 "한정하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사천시"를 "시"로 한다.

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과"를 "다음 각 호와"로 한다.

제12조제3항 중 "제14조에서 규정한"을 "제14조 각 호에 따른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신청일로부터"를 "신청일부터"로, "이내"를 "이내에"로 한다.

제14조제2호 중 "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"을 "자신이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"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	제2조(정의)
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"희생·공헌자"라 함은 다음 각 목	1. <u>"희생·공헌자"란</u>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	
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	
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	
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	
사람을 말한다.	
가. ~ 나. (생 략)	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다. <u>대한민국의</u> 자유민주주의의	다. <u>대한민국</u>
발전	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2. 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 희생·	2. "국가보훈대상자"란
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	
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	
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	
말한다.	
3. <u>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라 함은</u>	3. <u>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란</u>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	
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	
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 이 조례에	제3조(예우 및 지원 대상)
<u>의한</u>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	<u> 따른</u>
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<u>의하</u>	<u>따라</u>
<u>여</u>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	
가를 받은 단체(이하 "단체"라 한다)	
로 한다.	
제6조(단체 예산지원) 단체에 대한 지	제6조(단체의 지원) 사천시장(이하

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"시장"이라 한다)은 단체가 다음 각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원할 수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있다.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

- 1.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<u>시</u> 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
- 호국·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, 전적지 <u>순례</u> 비 등 지원
- 3.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 을 위한 각종 **사업비 지원**
- 4. 그 밖에 국가보훈 및 나라사랑 정 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<u>사업 지원</u>

제7조(<u>복지지원 등</u>) <u>국가보훈대상자에</u> 제 <u>대한 복지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</u> 다.

- 1. ~ 2. (생략)
- 3.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 비용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다.
- 4. (생략)

제8조(민간의 참여조성) <u>사천시장(이</u> 제 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희생·공 현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<u>창달</u>과 관련하여 민간 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 시 제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
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
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
<u>있다.</u>
1 <u>시</u>
<u>설건립</u>
2
<u>亡</u>
<u>례</u>
3
<u>사업</u>
4
<u>사업</u>
7조(복지지원) 시장은 국가보훈대상
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를 지원할
수 있다.
1. ~ 2. (현행과 같음)
3
<u>범위에</u>
서
 4 (최레기 기 호)
4. (현행과 같음)
8조(민간의 참여조성) <u>시장</u>
<u></u>
<u>전</u>
·
9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)

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 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<u>창달</u>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<u>관계기관에 대하여</u>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제10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 시장 은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「사천시 참 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」에 의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받 는 대상자는 제외한다.
 - 1. 보훈명예수당 : 월 3만원
 - 2. (생략)
 -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 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 순 위자 한 명에 <u>한하고</u>, 이를 승계할 수 없다.
 - 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일 현재, 사 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<u>사천시</u>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.
- 제10조의2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 자) 제10조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대상자는 <u>다음과</u> 같다.
 - 1. ~ 3. (생략)

제12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)

<u>발전</u> <u>발전</u> <u>관계기관에</u>
 제10조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) ①
 1 <u>5만원</u> 2. (현행과 같음) ②
<u>-</u>
제10조의2(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대상 자) <u>다음 각 호와</u>
1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방법 등)

- ① · ② (생 략)
- ③ 보훈명예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<u>제14조에서 규정한</u> 지 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
- ④ 사망위로금은 <u>신청일로부터</u> 7일 이내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한다.
- 제14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) 시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 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.
 - 1. (생략)
 - 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명예수당을 <u>받았거나 타인</u>
 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
- 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<u>시행에 관</u> <u>하여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<u>정할</u> <u>수 있다</u>.

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
<u>제14조 각 호에 따른</u>
④ <u>신청일부터</u> <u>이</u>
<u>내에</u>
제14조(보훈명예수당의 지급중지)
1. (현행과 같음)
1. (もも)を日) 2
_,
<u>자신이 받았거나 다른</u>
사람이
<u><삭 제></u>

관 련 법 규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23조(공훈선양사업의 추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 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13. 5. 22.〉

- 1.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
- 2.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(이하 " 공훈선양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·관리
- 3.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
- 3의2. 희생·공헌자의 발굴
- 4.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
- 5. 그 밖에 희생 ·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·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·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·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. 〈신설 2013. 5. 22.〉